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6-832호

행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84(2009.03.05)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구역지정 되고, 2012.07.27. 조합설립인가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27(2015.10.22)호 및 성동구고시 제2016-64(2016.06.30)호, 성동구고시 제2016-84(2016.09.08)호로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구역(변경)지정된 행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당해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합원(토지등소유자) 등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,
2. 행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16년 10월 20일
성 동 구 청 장

1. 공람기간 : 2016. 10. 20. ~ 2016. 11. 4.(14일 이상)
2. 공람장소 :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및 행당제1동주민센터
또는 행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소
3. 공람내용
 - 가. 사업명칭 : 행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
 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1) 위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
 - 2) 면적 : 48,345.3m²
 - 다. 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1) 성명 : 행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문기남
 - 2) 주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6가길 42
 - 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
 - 마.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·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: 공람장소 비치

바. 건축계획 및 주택규모

구분	대지면적	건폐율	용적률	층 수	용 도	주택규모	비고
신청 내용	27,572.4m ²	20.41%	298.47%	지하 3~ 지상 35층 (평균 30.2층)	아파트 94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	36형 ~ 84형 (비치도서 참조)	

사. 사업시행인가 신청 도서 : 공람장소 비치

4. 의견서 제출방법 : 사업시행인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
이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리구 주거정비과로 제출